



Subject: Newsflash of III 6

제6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6차)가 런던 IMO 본부에서 2019년 7월 1일에서 5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II 6차 주요 논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항만수용시설의 부적절성 (의제 3)

- 항만수용시설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검토
 - 2018.3.1부터 회원국들은 GISIS 모듈을 통해 쓰레기 항만수용시설 불충분 사항을 IMO에 보고하고 등재 사항에 대해 조사결과를 입력할 수 있음
 - 향후, 항만수용시설 불충분 보고서에 대한 사후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의무 불이행 항만의 GISIS 표출 등 방안 마련 예정

2. 해양안전보고서 분석에 따른 교훈 및 안전문제 (의제 4)

- 사고조사 및 해양안전조사 보고서의 분석에서 얻은 교훈
 - III 6차는 사고조사에 관한 통신작업반의 보고서를 분석 및 검토하였으며, 해양안전조사 보고서의 분석에서 얻은 교훈의 최종안을 승인하였음
- 마셜제도의 스텔라데이지호 조사보고서에서 교훈 및 안전문제를 도출하고 차기 102차 MSC 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토록 협의 되었음

3. PSC 활동과 절차의 조화로운 시행 (의제 5)

- 제31차 총회에서의 채택을 위하여 2019 항만국통제 절차서 개정안이 최종 확정 되었음.
 - 전자기록부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의 반영은 MEPC 75 및 PPR 7에서 재검토 후 III 7에서 재논의 예정
 - 회원국들은 점검 시 통일된 훈련매뉴얼의 개발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작업계획서 승인에 동의, MEPC 75 및 MSC 102 승인 후 작업 진행 예정



4. HSSC에 따른 검사지침의 최신화 (의제 8)

○ HSSC 검사지침 최신화

- III 6에서는 HSSC 검사지침 및 의무규정 목록에 관한 통신작업반의 결과보고서를 고려하고, 31차 총회의 채택을 위한 개정안을 확정함:

○ 비자항무인바지선에 대한 MARPOL 협약의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 면제

- III 3차(2016)는 MEPC 69차에서 합의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자항 무인 (UNSP) 바지선박에 대한 MARPOL 협약의 면제에 관련된 협약개정안 및 관련 지침서 초안을 개발하였음:

- i. 어떠한 면제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ii. 면제증서는 MARPOL 협약의 개별 부속서 별로 발행되어야 함;
- iii. MARPOL Annex IV 또한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의 면제에 포함되어야 함;
- iv. 기름기록부에 관한 MARPOL Annex I의 17.1 규칙에 관련된 참조사항은 유지되어야 함; 및
- v. 지침서가 승인되고 나면, 이는 회람문서(Circular) 형태로 발행되어야 함

- III 6차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UNSP바지선의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의 면제를 위한 MARPOL 부속서 I, IV, 및 VI의 개정안 및 지침서의 초안에 동의하였으며 이를 MEPC 75차에 보고함:

- .1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의 면제에 추가하여, 기술 및 운항적 요건들 또한 UNSP barge에 적용되지 않음을 지침서 상에 명시; 및
- .2 면제증서 효력정지 관련 개정안에 대해, 이는 현행 IMO 협약에 따라 정착된 관행에 위배될 수 있음을 고려, 해당문구를 MARPOL 협약 개정안에서 삭제



Briefings of IMO Meeting III 6 (1 -5 July 2019)

BRIEFING STATUS

Flash

No. IMO-0010-2019

(Sub-committee meeting only has 1 Flash News)

- 면제증서의 유지 책임은 선주에게 있으며, 면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항목을 부속서 및 지침서에 추가함

○ BWM 협약의 검사지침

- III 6 은 다음과 같이 BWM 협약 관련 HSSC 검사지침의 개정안을 완성함
 - .1 2020년 10월 28일 이후 설치된 BWMS는 BWMS Code를 준수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BWMS는 Res.MEPC.125(53), Res. MEPC.174(58), 또는 Res.MEPC.279(90) 중 적용되는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그리고
 - .2 BWMS의 작동 검사가 커미셔닝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BWM.2/Circ.70을 고려하여 BWM 협약의 D-2 기준을 준수하는 평형수의 배출 관련 증거자료를 확인할 것
- 3개의 BWMS 형식승인 기준, Res.MEPC.125(53), Res.MEPC.174(58) 및 Res.MEPC.279(70)을 적용하고 BWMS 설치 후 검사에 대한 요건을 포함하여 HSSC 검사지침 개정안을 완성함 -끝-

P.I.C:
문서인 / 선임검사원
협약업무팀
Tel: 070 8799 8335
Fax: 070 8799 8339
E-mail: convention@krs.co.kr

협약업무팀장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